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46
----------	-------

발의연월일 : 2019. 11. 1.

발의자 : 김학용 · 이장우 · 임이자

문진국 · 신보라 · 이종배

정진석 · 강효상 · 박성중

정양석 · 김동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수량과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가 물 관리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광역과 지방을 아울러 상수도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고, 공사가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지역에서의 하수처리장 운영 및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수질·수생태를 포함하는 물환경 관리 사업을 수행

하게 되었으며, 물재이용 사업의 경우도 공단과 협업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금번 기능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사의 지방 및 마을상수도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댐 및 상류에 대한 물 환경 관리 사업 및 물재 이용 사업 근거를 추가하는 한편, 하수도 관련조항을 일부 조정하여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가.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하수도 사업범위를 조정함(안 제4조제4항 등).
- 나. 공사의 수도사업 범위 중 지방상수도(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함)와 마을상수도의 제한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2호).
- 다. 공사의 사업범위에 댐 및 그 상류의 물 환경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3호).
- 라. 공사의 사업범위에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관리, 기술 지원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4호의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수도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를 “지방상수도는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가목의 땜 및 그 상류의 하수도 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 환경 관리 사업
4의2.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지원
제9조제1항제5호의2 중 “제1호 · 제2호 · 제4호 및 제5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땜 상류의 범위 및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2호, 제4호”를 “제2호, 제3호,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용지 · 수자원개발시설 · 수도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용지 · 수자원개발시설 · 수도시설”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수면”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수면”으로, “정도와 배출된 하수의 양과 오염도”를 “정도”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수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권”을 “관리권”으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사업인가 및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수도사업인가”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4조제4항 중 “제9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4호 및 제5호”를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로 한다.

제26조의2 전단 중 “댐”을 “댐 및 그 상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 ③ (생 약)</p> <p>④ 국가는 「댐건설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u>「수 도법」</u>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 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 관리권”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도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유지 · 관리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수 처리구역(이하 “하수처리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양 및 오염도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p>	<p>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수 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 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 관리권”이라 한다)----- ----- ----- ----- ----.</p> <p><u><삭 제></u></p>

<p>리를 말한다.</p> <p>⑥ (생 략)</p> <p>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u>수도시설관리권</u>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p> <p>----- <u>수도시설관리권</u>-----</p> <p>-----</p> <p>-----</p> <p>-----</p> <p>-----.</p>
<p>⑧ (생 략)</p> <p>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⑧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업) ① -----</p> <p>-----.</p>
<p>1. (생 략)</p> <p>2. 수도시설(일반수도 중 <u>지방</u>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제외 한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p> <p>가. ~ 다. (생 략)</p>	<p>1. (현행과 같음)</p> <p>2. ----- <u>지방</u>상수도는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p> <p>-----</p>
<p>3. 제1호가목의 댐의 수질조사</p> <p>4.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이하 “광역상수원”이라 한다)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3. 제1호가목의 댐 및 그 상류의 하수도 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 환경 관리 사업</p> <p><삭 제></p>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 관리
(국가 또는 공사가 전액 투자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5. (생략)

5의2. 공사가 제1호 · 제2호 ·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 료의 징수

가. · 나. (생략)

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 료

7.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4의2.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기 술지원

5. (현행과 같음)

5의2. ----- 제1호부터 제3호까
지. 제4호의2 및 제5호-----

6. -----

가. · 나. (현행과 같음)

<작제>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지역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 · 인가 · 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른 땅 상류의 범위 및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p>1. 제9조제1항제1호가목 · 나목 · 라목, <u>제2호</u>, <u>제4호</u>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 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 · 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p>	<p>1. ----- ----- <u>제2호</u>, <u>제3호</u>, <u>제4호</u>의 2----- ----- ----- -----</p>
<p>2. (생 략) <u>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에 관한 실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u></p>	<p>2.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③ ~ ⑥ (생 략)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u>용지 · 수자원개발시설 · 수도시설</u> 또는 <u>하수종말처리시설</u>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p>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용지 · 수자원개발시설 · 수도시설</u>----- ----- ----. ----- ----- -----.</p>
<p>제15조(사용계약) ① (생 략) <u>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u></p>	<p>제15조(사용계약)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p>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수처리구역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

③ 제1항-----

----- 수면-----

-----.
-----.

④ ----- 제1항-----

-- 수면-----

--.
--.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① -----

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
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
용 정도와 배출된 하수의 양과
오염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
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협의·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일·허가등의 고시 또는

-- 수면 --

-- 정도 --

② (현행과 같음)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u>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u>	<삭 제>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u>수도시설을 포함한다.</u>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건설한 <u>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u>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① -- ----- --- <u>수도시설</u> ----- ----- ----- ----- ----- ----- ---. ② ----- --- <u>관리권</u> ----- ----- ----- ----- ----- -----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u>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권</u> (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인가의 특례) ----- ----- -----
제21조(인가의 특례) 공사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21조(인가의 특례) ----- ----- -----

<p>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u>수도사업인가</u> 및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 -- <u>수도사업인가</u>----- ----- ----- -----.</p>
<p>제21조의2(「하수도법」의 적용) <u>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본다.</u></p>	<p><u><삭 제></u></p>
<p>제2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u>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u>의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u>----- ----- ----- ----- ----- ----- ----- -----. -----.</p>
<p>⑤ ~ ⑦ (생 략)</p> <p>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설</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 -- <u>댐 및 그 상류</u>----- -----</p>

치 및 운영·관리계획을 작성하 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 ----- -----. -----.
--	------------------------------------